

2006. 12. 22(금) 10:00

제134회 정례회 예결위 제4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규 창)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 토 경 과

- 제출일자 : 2006. 11. 21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6. 12. 21

2.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 감	증감률
계	256,298,369	239,319,217	16,979,152	7.1
일반회계	217,367,382	202,845,680	14,521,702	7.2
특별회계	38,930,987	36,473,537	2,457,450	6.7

- 금번 추경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감분 반영,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사업변경 등 예산이 변경된 분야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 제2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 9,715만 2천원이 (7.1%)증액된 2,562억 9,33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2,173억 6,73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2,170만 2천원이(7.2%)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89억 3,0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5,745만원이(6.7%) 증액되었음.

나.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7,367,382	100	202,845,680	100	14,521,702	7.2
자체수입	소 계	34,535,071	15.9	31,134,520	15.3	3,400,551	10.9
	지방세	13,612,699	6.3	11,564,209	5.7	2,048,490	17.7
	세외수입	20,922,372	9.6	19,570,311	9.6	1,352,061	6.9
의존수입	소 계	182,832,311	84.1	171,711,160	84.7	11,121,151	6.5
	지방교부세	107,569,658	49.5	105,896,658	52.2	1,673,000	1.6
	조정교부금	3,240,000	1.5	3,240,000	1.6	0	0
	보조금	72,022,653	33.1	62,574,502	30.9	9,448,151	15.1
	국고보조금	48,396,835	22.3	45,016,968	22.2	3,379,867	7.5
	도비보조금	23,625,818	10.8	17,557,534	8.7	6,068,284	34.6

-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총 2,173억 6,73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2,17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55만 1천원이 늘어난 345억 3,507만 1천원이며 구성비는 15.9%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2,115만 1천원이 늘어난 1,828억 3,231만 1천원이며 구성비는 84.1%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감	
		예 산 안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612,699	100	11,564,209	100	2,048,490	17.7
보 통 세	소 계	12,429,699	91.3	10,639,599	92.0	1,790,100	16.8
	주 민 세	2,050,000	15.1	1,759,300	15.2	290,700	16.5
	재 산 세	1,480,000	10.9	1,290,300	11.2	192,700	14.9
	자 동 차 세	1,866,699	13.7	1,866,699	16.3	0	0
	도 축 세	110,000	0.8	310,700	2.7	△200,700	△64.6
	담 배 소 비 세	3,350,000	24.6	2,570,580	22.1	779,420	30.3
	주 행 세	3,570,000	26.2	2,842,020	24.5	727,980	25.6
목 적 세	소 계	878,000	6.5	761,740	6.6	116,260	15.3
	도 시 계 획 세	693,000	5.1	608,150	5.3	84,850	14.0
	사 업 소 세	185,000	1.4	153,590	1.3	31,410	20.5
과년도 수입		305,000	2.2	162,870	1.4	142,130	87.3

-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20억 4,849만원(17.7%)이 늘어난 136억 1,269만 9천원으로
- 그중 도축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64.6%인 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는 55.9%가 늘어난 6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감	
		예 산 안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0,922,372	100	19,570,311	100	1,352,061	6.9
경 상 적 수 입	소 계	5,658,805	27.0	4,541,765	23.2	1,117,040	24.6
	재산임대수입	104,012		80,953		23,059	
	사용료 수입	345,529		457,459		△111,930	
	수수료 수입	1,531,122		1,143,783		387,339	
	사업장 생산수입	9,870		5,870		4,000	
	징수교부금수입	347,272		282,500		64,772	
	이 자 수 입	3,321,000		2,571,200		749,80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15,263,567	73.0	15,028,546	76.8	235,021	1.6
	재산매각수입	105,733		40,000		65,733	
	순세계잉여금	13,410,227		13,410,227		0	
	이 월 금	705,556		705,556		0	
	국비 사용잔액	529,865		529,865		0	
	도비 사용잔액	175,691		175,691		0	
	부 담 금	608,556		608,556		0	
	잡 수 입	237,352		184,207		53,145	
	지난연도수입	196,143		80,000		116,143	

- 세외수입은 13억 5,206만 1천원이 늘어난 209억 2,237만 2천원이며,
- 이중 경상적 수입은 11억 1,704만원이 늘어난 56억 5,880만 5천원으로 27.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임시적 수입은 2억 3,502만 1천원이 늘어난 152억 6,356만 7천원으로 73.0 %를 차지하고 있음

다. 세출예산(일반회계)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 (△) 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17,367,382	100	202,845,680	100	14,521,702	7.2
경 상 예 산(100)	54,556,660	25.1	54,722,520	27.0	△76,112	△0.1
인 건 비(110)	31,120,209	14.3	30,955,913	15.3	164,296	0.5
경상적경비(120)	23,436,451	10.8	23,766,607	11.7	△240,408	1.0
사 업 예 산(200)	154,451,166	71.1	141,958,343	70.0	12,427,823	8.8
보조사업(210)	103,814,758	47.8	93,762,827	46.2	10,066,892	10.7
자체사업(220)	50,636,408	23.3	48,195,516	23.8	2,360,892	4.9
채 무 상 환(300)	350,000	0.2	350,000	0.2	0	0
지방채상환(310)	350,000	0.2	350,000	0.2	0	0
예 비 비 등(400)	8,009,556	3.7	5,814,817	2.9	2,169,991	37.3
예 비 비(410)	5,446,208	2.5	3,200,244	1.6	2,221,216	69.4
기 타(420)	2,563,348	1.2	2,614,573	1.3	△51,225	△1.4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173억 6,738만 2천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2,170만 2천원(7.2%)이 증액되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45억 5,566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액 삭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116만 2천원(△0.1%)이 감액되었으며,
- 사업예산은 1,545억 5,116만 6천원으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사망사업, 지방하천수해복구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 2,782만 3천원(8.8%)이 증액되었음
-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음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999만 1천원(37.3%)이 증액되었음

□ 기능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액)	증(△)감	
	예 산 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12,367,382	100	202,845,680	14,521,702	7.2
일반행정비(1000)	55,759,409	25.7	55,595,910	163,499	0.3
입법 및 거관리(1100)	1,339,168	0.6	1,353,038	△13,870	△1.0
일반행정비(1200)	54,420,241	25.0	54,242,872	177,369	0.3
사회개발비(2000)	69,556,430	32.0	67,895,209	1,661,221	2.4
교육및문화(2100)	15,436,214	7.1	15,020,264	415,950	2.8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2200)	19,524,474	9.0	19,314,221	210,253	1.1
사회보장비(2300)	24,947,455	11.5	25,597,437	△649,982	△2.5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2400)	9,648,287	4.4	7,963,287	1,685,000	21.2
경제개발(3000)	85,096,640	39.1	74,516,084	10,580,556	14.2
농수산개발(3100)	34,111,919	15.7	32,875,871	1,236,048	3.8
지역경제개발(3200)	6,092,139	2.8	5,607,903	484,236	8.6
국토자원보존개발 (3300)	40,647,985	18.7	32,799,008	7,848,977	23.9
교통관리(3400)	4,244,597	2.0	3,233,302	1,011,295	31.3
민방위비(4000)	358,695	0.2	463,485	△104,790	△22.6
민방위관리(4100)	347,395	0.2	452,185	△104,790	△23.2
소방관리(4200)	11,300	0.0	11,300	0	0.0
지원 및 기타경비(5000)	6,596,208	3.0	4,374,992	2,221,216	50.8
지방채상환(5100)	350,000	0.2	350,000	0	0.0
제지출금(5200)	800,000	0.4	800,000	0	0.0
교 부 금(5300)	0	0.0	0	0	0.0
예 비 비(5400)	5,446,208	2.5	3,224,992	2,221,216	68.9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위원회》

○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일반회계 1건 15,000천원 삭감
- 세출예산 : 일반회계 1건 30,000천원 삭감하여 그중 15,000천원은 예비비로 대체
- 특별회계 등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

○ 세입예산안 삭감조서

(단위 : 천원)

담당 실과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감 액	사 유	페이지
	장	항					
사 회 복지과	사 회 개발비	사회복지	521-01(시도비보조금) 여성장애인 중심 작 업장(1개소)	15,000	15,000	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추진 불가	44

○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단위 : 천원)

담당 실과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감 액	사 유	페이지
	장	항					
사 회 복지과	사 회 개발비	사회복지	307-03(사회단체보조금) 여성장애인 중심 작 업장(1개소)	30,000	30,000	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추진 불가	96

○ 기타주문사항

- ◆ 범죄예방 CC TV설치사업은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피의자 검거 등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도로변 수 개소에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향후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에 신속히 대응,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CC TV작동 및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유사시 소기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특단의 방안을 강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과 같이 가결
- 세출예산 : 원안과 같이 가결

○ 세입예산안 삭감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문사항

- ◆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실적이 없이 예산전액을 삭감편성한 사례
 - ◆ 사업계획의 차질로 제1회 추경에 변경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함으로써 금회에 명시이월하는 사례
 - ◆ 부서내에서의 업무공유 미비로 예산을 이중계상하여 삭감 편성한 사례
- ⇒ 이와 같은 사례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

-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태풍 “에위니아”수해피해 복구,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여야 하나 금번 이월액이 156건에 544억원은 예산의 21%로서 이것은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철저한 사업목적과 기간 등을 수립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 <기획감사실>